#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8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 김승수 · 김예지 · 임이자

우재준 · 성일종 · 박충권

신성범 • 권영진 • 정희용

서지영 • 박성훈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2

조제4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를 보호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2.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의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정보
-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회의 등) ① ~ ③ (생	제22조(회의 등)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u>「성폭</u>	④ <u>다음</u>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를
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u>보호하기</u>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	
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	
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	
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lt;신 설&gt;</u>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u>&lt;신 설&gt;</u>	2. 「형법」, 「사행행위 등 규
	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의 법
	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
	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u>&lt;신 설&gt;</u>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
	<u>류 정보</u>
<u>&lt;신 설&gt;</u>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
	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
	<u></u>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